

#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09. 07(화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4. 12. 21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4. 12. 23(목)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12. 23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환경복지과장 최호영)

가. 제안이유

- 공중화장실설치·관리 관련규정이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, 대기환경보전법, 공중위생법 등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·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·공포(2004.1.29)와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·공포(2004.7.29)되어 7.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·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고,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.  
(안 제6조)
-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
-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.(안 제7조)
- 청소기준, 대·소변기 소독주기, 내·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·관리를 정함.(안 제9조)
-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,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11조 내지 12조)
-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·관리기준을 정함.(안 제14조 내지 제15조)
-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.(안 제16조)
- 공중화장실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.(안 제18조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가. 본 조례는 그동안 24개의 개별법규의 적용을 받아 효과적인 유지·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공중화장실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,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법규의 위임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.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과 유지·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방안, 관리인의 교육,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,
-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에 따른 편의용품지원근거와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, 유료화장실 운영을 위한 신고절차등을 규정하였으며,
-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